

[별표 6]

하수처리사업소의 위치와 관할구역(제111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| 위 치 | 관 할 구 역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중랑 하수처리사업소 |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 | 노원, 동대문, 중랑, 성북, 도봉, 강북, 광진 전역, 종로, 성동, 중구 일부 |
| 단천 하수처리사업소 | 서울 강남구 일원동 580 | 강동, 송파 전역, 강남, 서초, 하남시 일부 |
| 가양 하수처리사업소 | 서울 강서구 마곡동 91 | 영등포, 관악, 동작, 구로, 양천, 강서, 금천 전역, 강남, 서초, 광명시 일부 |
| 난지 하수처리사업소 |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-2 | 마포, 용산, 은평, 서대문 전역, 종로, 종구, 성동 일부 |

[별표 7]

근로청소년회관의 위치(제114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| 위 치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남부근로청소년회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|
| 동부근로청소년회관 |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 78-5 |

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중 “16,679명”을 “16,351명”으로 하고, 안 제2조제1호 중 “11,401명”을 “11,079명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6,679명”을 “16,351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 중 “11,531명”을 “11,073명”으로 하며, 동조제2호 중 “4,593명”을 “4,746명”으로 하고 동조제4호 중 “223명”을 “20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特別市公共施設設置 및 管理運營委託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중 여성정책관(여성개발담당관) 시설명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여성정책관 (여성개발담당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○ 시립아동복지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립소년의집 - 시립동부아동상담소 ○ 서부여성발전센터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
별표1 주관국(과)란 중 “보건복지국(청소년과)”을 “문화관광국(체육청소년과)”으로 하고, 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